

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

## 1. 제안경위

- 가. 제 출 자 : 서울특별시장
- 나. 의안번호 : 제1995호
- 다. 제출일자 : 2020. 10. 16.
- 라. 회부일자 : 2020. 10. 26.

## 2. 제안사유

- 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된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함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함(안 부칙 제2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등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
다. 입법예고

○ 기 간 : 2020. 9. 2. ~ 2020. 9. 22.

○ 제출의견 : 의견 없음

## 5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장훈)

### 가. 개요

-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공공자전거(일명 “따릉이”) 이용요금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일명 “제로페이”)으로 결제하는 경우 “2020년 12월 31일”까지 이용요금의 50% 범위에서 감면하고 있는 사항을 부칙개정을 통해 “2021년 12월 31일”까지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### 나. 검토의견

- 공공자전거 이용요금을 제로페이로 결제시 50%범위내에서 감면하도록하는 것은 '19년 9월 동 조례 개정<sup>1)</sup>을 통해 그 근거를 마련하였고, 당시 요금 감면 기간은 부칙을 통해 '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였음

또한 '19년 12월 동 조례의 부칙을 추가로 개정<sup>2)</sup>하여 요금 감면 기간을 '19년 12월 31일에서 '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 바 있

---

1) 서울특별시조례 제7326호(2019. 9. 26. 일부개정, 2019. 9. 26 시행)

-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결제 시 ‘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’ 사용자에게 대한 공공자전거 이용요금 감면에 관해 규정하고, 감면적용 유효기간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짐

2) 서울특별시조례 제7389호(2019. 12. 31. 일부개정, 2019. 12. 31 시행)

-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(제로페이)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

으며, 금번 동 개정조례안은 요금 감면기간을 재차 1년 더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

- 현재 공공자전거의 이용요금체제는 일일권과 정기권으로 구분되고, 일일권은 1시간권과 2시간권이 있으며, 정기권은 사용기간 따라 1주일, 1개월, 6개월, 1년 단위의 1시간권 및 2시간권을 판매하고 있으며 제로페이 결제시 일일권은 50%, 정기권은 30%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있음

※ 참고 :공공자전거 이용요금 및 제로페이 할인에 따른 요금

구 분 (단위: 원)		일일권(50%감면)		정기권(30%감면)		
		1일	1주일	1개월	6개월	1년
1시간권	감면 전	1,000	3,000	5,000	15,000	30,000
	감면 후	500	2,100	3,500	10,500	21,000
2시간권	감면 후	2,000	4,000	7,000	20,000	40,000
	감면 후	1,000	2,800	4,900	14,000	28,000

- '20년 1월부터 6월까지 공공자전거 이용권은 약 230만장이 판매되었고, 판매금액은 약 62억원으로 이중 정기권이 57%, 일일권이 43%를 차지하였으며, 정기권 금액의 28%가 그리고 일일권 금액의 17%가 제로페이로 결제된 것으로 나타나 제로페이 이용 장려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

※ 참고 : '20년 1~6월 공공자전거 정기권, 일일권 결제 현황

판매 건수 (천건)	판매금액(백만원)						
	계	정기권			일일권		
		소계	일반	제로페이	소계	일반	제로페이
2,306	6,189	3,528	2,544	984	2,661	2,210	451
	100%	57%(정기권 금액중 28%가 제로페이)			43%(일일권 금액중 17%가 제로페이)		

- 또한 동 개정조례안과 더불어 제로페이 이용시 요금감면 기한 현장을 위해 2개의 개정조례안<sup>3)</sup>이 제출되어 있고, 제로페이 이용자에 대한 이용료를 지속 감면하는 정책을 통해 제로페이 이용저변 확대 및 결재수단 다양화, 시설 이용요금 인하 등 직접적으로 공공자전거 이용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혜택을 기대할 수 있으며, 공공자전거 이용 촉진에 기여하여 녹색교통 환경 조성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
- 한편 동 개정조례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에서는 「21년 감면이전 이용요금 예상총수입」에 「20년 정기권과 일일권 수입 비율」, 「20년 제로페이 결제 비율」 그리고 「요금할인률」을 곱하여 「감면액 총액」을 추계<sup>4)</sup>하였으나, 현실적으로 「21년 정기권과 일일권 수입 비율」과 「21년 제로페이 결제 비율」을 알 수 없다는 점에서 '20년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임

3) 제로페이 요금감면 기한 연장 조례(제출일자:'20.10.16.)

의안번호	조례명	감면대상	감면율	감면기한
2001	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서울대공원 등 입장료, 공원시설 이용료	다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함 입장료 : 30%, 이용료 : 10%	“2020년 12월 31일”을 “2021년 12월 31일”로 연장
1998	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청소년이 청소년시설 사용시 사용료 등	10%범위에서 시장이 정함	

4) 동 개정조례안 적용시 '21년도 공공자전거 이용수입 감소 총액 : 1,307백만원

- 정기권 : 741백만원 이용수입 감소
  - 감면이전 공공자전거 '21년 이용요금 예상 총수입액(15,538백만원) × ①총수입 대비 정기권 수입 비율(57%) × ②제로페이 정기권 사용자 추정비율(28%) × 이용요금 감면액(30%) = 741백만원
- 일일권 : 566백만원 이용수입 감소
  - 감면이전 공공자전거 '21년 이용요금 예상 총수입액(15,538백만원) × ①총수입 대비 일일권 수입 비율(43%) × ②제로페이 일일권 사용자 추정비율(17%) × 이용요금 감면액(50%) = 566백만원

다만, 비용추계시 '21년 감면이전 이용요금 예상총수입을 155억 38백만원으로 추산하였으나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불명확하여 동 개정조례안 적용시 예상되는 공공자전거 이용수입 감소분 13억 7백 만원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